

#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하병문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5975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년월일 : 2021.06.04.

발의의원 : 하병문 의원  
김지만 의원  
이영애 의원  
이태손 의원  
임태상 의원  
정천락 의원

## 1. 제안 이유

회계연도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안정적·통합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·예탁에 관한 규정을 보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다른 기금 및 회계의 예탁의무에 관해 규정함 (안 제8조)
- 나. 예탁기간을 규정함 (안 제9조)
- 다.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규정함 (안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지방재정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다른 기금 및 회계의 예탁의무 등)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단기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
제9조(예탁기간)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계정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. 다만, 통합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.

제10조(예탁금의 원리금상환) 제9조에 따른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3월 31일, 6월 30일, 9월 30일, 12월 20일로 한다. 이 경우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

(붙임 1)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행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<u>제8조(다른 기금 및 회계의 예탁 의무 등)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기금 및 특별 회계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각 기금 및 특별 회계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시 장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단 기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.</u></p> 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<u>제9조(예탁기간) 제3조제2항제1 호에 따른 통합계정의 예탁기간 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으로 한다. 다만, 통합기금 운 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 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.</u></p>   |

<신 설>

제10조(예탁금의 원리금상환) 제9조에 따른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3월 31일, 6월 30일, 9월 30일, 12월 20일로 한다. 이 경우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8조 ~ 제11조 (생략)

제11조 ~ 제13조 (현행 제8조 ~ 제11조와 같음)

(붙임 2)

## 관 계 법 령

### [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]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

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 [지방재정법]

**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**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**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
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## 경비

3. 공익·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  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-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## [지방자치법]

- 제134조(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